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하며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해 왔던 교내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축조 신고대상의 가설건축물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